

# 2022 열린어린이집 세부선정기준 Q&A

2022. 5. 17.

Q1. 모든 서류는 제출기간에서 이전 1년을 보는 건가요?

⇒ 네. **사업실적 평정기간은 1년**을 기준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실적<br>평정기간           | 신청기간<br>(보육통합<br>정보시스템)       | 현장점검<br>기간             | 서류제출<br>(현 제출기간 미정)                                 | 점검<br>방법                 | 점검항목   |
|--------|------------------------|-------------------------------|------------------------|---|--------------------------|--|
| 신 규    | 2021.11.<br>~ 2022.10. | 2022. 7. 1.<br>~ 2022. 7. 30. | 2022. 9.<br>~ 2022.10. | 1.문서확인항목<br>문서(참여성 일부,<br>지속가능성, 다양성)<br>2.지자체기준 문서 | 현장<br>점검<br><br>서류<br>제출 | 개방성 전체, 참여성 일부<br>(신입원아부모오리엔테이션,<br>부모개별상담, 부모어린이집<br>참관)<br><br>1.참여성 일부(어린이집운영위원회,<br>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br>부모 만족조사, 자체 부모모임 등)<br>지속가능성 전체, 다양성 전체<br><br>2.지자체기준(어린이집평가참여,<br>보육교직원 안전교육실시, 취약<br>보육지원 영유아 부모 대상 우수<br>프로그램 운영사례) |
| (재)재선정 | 2021. 8.<br>~ 2022. 7. | 2022. 6. 1.<br>~ 2022. 6. 30. | 2022. 8.<br>~ 2022. 9. | 지자체기준 문서  | 현장<br>점검<br><br>서류<br>제출 | 개방성, 참여성,<br>지속가능성, 다양성 모두<br><br>지자체기준(어린이집평가참여,<br>보육교직원 안전교육실시, 취약<br>보육지원 영유아 부모 대상 우수<br>프로그램 운영사례)   |
| 정기점검   | 2021. 6.<br>~ 2022. 5. | 해당없음                          | 2022. 6.<br>~ 2022. 7. | 해당없음  | 현장<br>점검                 |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br>모두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으로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정보공시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항목에 2021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공시해야 하나요?

⇒ 네. 2022 보육사업안내에는 세입·세출 결산서 공시시기가 10월로 명시되어 있으나, **경기도 보육정책과 -553(2022.3.29.)호 “2021년 어린이집 결산보고 안내 협조요청”**에 따라 **2022.3.1.~ 5.31.까지 2021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경기도 지침에 따라 현장점검 시작 월인 6월에는 **2021년 세입·세출결산서 공시내용을 확인**하게 됨으로 **5월까지 2021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반드시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가정연계자료 배부(키트포함) 후 어린이집 카페에 참여사진을 게시해 주시면 저희가 댓글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린이집과 부모의 양방향 소통으로 인정이 되나요?

⇒ 아니요. 댓글 소통은 의견이나 의사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모티콘, 사진 등을 이용한 댓글은 양방향 소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적인 글로 소통**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키트 활동 후, 사진이나 후기작성 등을 공유하는 활동은 부모참여프로그램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카톡방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를 실시해도 인정이 되나요?

⇒ 아니요. 당해연도에는 코로나19 완화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운영위원회를 서면회의로 진행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대면 또는 실시간 화상회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카톡방으로 진행할 경우, 서면회의로 갈음됨으로 운영위원회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5. 운영위원회 지역사회 인사 운영위원으로 아파트관리소장님 위촉 가능한가요?

⇒ 네. 어린이집이 위치한 해당 아파트관리소장은 해당어린이집과 관련 있는 지역주민, 지역대표에 해당됨으로 운영위원회 지역사회 인사 운영위원으로 위촉 가능합니다.

Q6. 화성시어린이집연합회와 연계하여 부모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모교육과 지역사회와의 협력활동 모두 인정이되나요?

⇒ 네. 실적평정기간 내에 부모교육 실시되었다면 부모교육, 지역사회와의 협력활동 모두 인정됩니다. 단, 결과 기록(참여부모명단포함), 연합회에서 발급한 공문(확인증 등)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화성시 어린이집연합회와 같이 공식 기관(및 단체) 성격을 띤 것이 아닌 각 분과별 또는 일부 몇 개의 어린이집에서 협력하여 진행한 경우에는 부모교육 진행으로는 인정가능하나, 지역사회와의 협력활동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7. 부모참여 프로그램으로 부모님께서 늦은 시간 자원봉사로 청소 또는 콘센트 등 교체 작업을 도와주시는 경우도 인정이 되나요?

⇒ 네. 부모참여프로그램 활동 내용과 활동 유형에 따라 운영시간을 달리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대청소나 수리 및 보수 등의 자원봉사는 영유아가 없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편이 안전하다 여겨지는 경우 저녁이나 주말에 진행하여도 인정됩니다.

Q8. 부모참여수업으로 키트가 나가고 줌으로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이 활동은 부모참여프로그램으로 인정이 되나요?

⇒ 네. 부모참여프로그램 중, 부모참여활동은 키트 유무로 활동인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목적에 맞게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실제 어린이집에 와서 참여하는 활동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활동 진행과정에서 실시간 양방향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인정이 됩니다. 더불어, 녹화된 영상을 송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활동내용이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내용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Q9. 부모만족도조사와 부모참여활동 선호 및 참여의견조사 결과 정리자료는 꼭 퍼센트로 표시해야 하나요?

⇒ 아니요. 꼭 퍼센트로 표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사 결과 내용이 한 눈에 확인될 수 있도록 수치화가 되어있다면 인정됩니다. 단, 결과 정리자료에 조사기간을 반드시 명시해 주시고, 조사기간이 평정기간 내 속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월 반드시 명시!!)

Q10. 할머니가 주 양육자면 참관자격이 주어지나요?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참관 자격은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의 보호자로 명시하고 있음으로 주 양육자가 아닌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모님의 참관이 진행되어야 참관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단. 부모가 없는 영유아의 경우, 법정 양육자가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참관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Q11. 참관을 엄마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열린어린이집은 개방된 양육환경 제공으로 부모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부모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Q12. 참관 확인방법이 방명록 혹은 운영일지 인지 두 문서 모두 다 충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참관 상시운영에 대한 확인 문서는 참관안내문이며 참관안내문에 게시된 시기 및 방법으로 참관이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면담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참관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으로 참관을 실시하여 주시고, 안내문상 명시된 문서를 모두 운영하시고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방명록 작성이 참관안내문이 명시되어져 있다면 꼭 구비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영일지는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기록한 기본적인 문서임으로 참관이 실시되었을 시에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13. 부모관련 연간계획안에 자체부모모니터링이 있어도 연간계획안으로 인정되는지요?

⇒ 네. 열린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연간계획안 내 자체부모모니터링을 연 2회 이상 계획되어 있다면 인정됩니다.

Q14. 부모참여활동 운영 정보를 온라인소통창구로 안내하지 않고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대신 가정통신문을 온라인소통창구에 게시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 실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 네. 가정통신문을 온라인소통창구에 게시하였다면 인정이 됩니다. 공지일자, 내용 등의 실시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소통창구를 확인하고 있음으로 공지일자와 내용이 확인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형식으로 공지하여도 인정됩니다. 더불어, 2022년부터는 열린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부모에게 안내되거나 공지되는 모든 내용을 온라인소통창구를 통해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소통창구 게시해야 할 내용: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부모참여활동 참여안내(미참여독려 포함), 부모참여활동 결과공지, 부모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공지, 자체 부모모니터링 실시 계획안내, 자체 부모모니터링 결과공지, 부모참여활동 선호 및 참여의견 조사 결과공지, 부모 어린이집 참관 안내문 등)

Q15. 관내 센터에서 교재교구를 대여 하여 부모님께서 일일교사로 참여하실 경우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 아니요. 위 경우 관내 유관기관 어린이집은 직접적으로 연계되었지만 관내 유관기관과 부모는 직접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열린어린이집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시에는 부모참여 활동 여부를 통해 평정이 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16. 급식관리센터에서 각 가정에 미션을 주고 부모가 같이 가정에서 참여할 경우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활동으로 인정되나요? 어린이집에서도 활동을 소개하고 연계합니다.

⇒ 아니요. 부모교육과 부모참여활동 평정기준에 준하여 운영되었을 경우에만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미션이나 키트 등의 간접적이 활동연계는 부모참여프로그램 평정기준에 준하지 않음으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17.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활동에 코로나 완화기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작년분(22년 2월 이전)은 인정되는 건가요?

⇒ 아니요. 전년도에도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에 대한 코로나 완화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음으로 22년 2월 이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은 평정기간 내 2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Q18. 급식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을 해주는 것도 지역사회가 되나요?

⇒ 네,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부모교육이 진행될 경우 부모교육,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두 항목 모두 인정됩니다. 단, 부모교육 평정기준에 준하여 운영되어야하며 유관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를 첨부, 어린이집 내 실시기록(참여부모명단)을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Q19. 코로나19로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활동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시간 화상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관내 유관기관을 활용한 대면 또는 실시간 화상 부모교육, 지역의 경찰관, 소방관, 보건소 직원 등의 활용한 실시간 화상 부모교육 및 실시간 화상 부모참여프로그램)하여 운영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대면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활동을 운영할 경우 지역사회의 공원, 산책로 등을 활용하여 일상생활과 관련한 부모참여프로그램(재능기부, 자원봉사 및 도우미, 나들이 및 견학지원 등)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Q20. 당해연도(2022) 부모모니터링이 실시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 부모모니터링이 진행되면 자체 부모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 아니요. 부모모니터링단 점검 이전에 자체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적평정기간 내 자체 부모모니터링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총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Q21.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시 부모위원 모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

⇒ 아니요.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면 진행 가능합니다. 단, 영·유아의 퇴소나 운영위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운영위원 중 결원이 생겨 운영위원 구성에 충족되지 않을 시 해당 항목 점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2022 보육사업안내 146p 참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

- 당해 어린이집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를 포함하여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학부모 대표**는 최대한 영유아 연령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

\* 영유아 수(현원기준) 100인 미만 어린이집 : 5인 이상 10인 이내,

100인 이상 어린이집: 11인 이상 15인 이내

Q22. 유관기관에서 진행한 부모교육을 실시간 화상교육(zoom)이 아닌 유튜브를 통해 부모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이 경우 부모교육 실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 아니요. 부모교육 평정기준 내 **온라인교육 운영 시 실시간 화상교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로 송출되었을 경우 **참여자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음**으로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부모교육으로 실적인정이 되지 않음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으로도 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경내용)

1. Q6. “사업 → 실적”으로 내용 수정
2. Q20, Q21, Q22 내용 추가

※ **본 Q&A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경기도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